

# 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3707 - 8299 / 전송 3707 - 8299  
 처리부서 : 도시개발과 (시청별관 2동1층) 담당 최석규 계장 한규상 과장 허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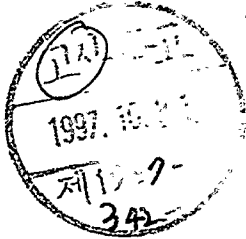
문서번호 도개58551-1560

시행일자 97.10.31

(제1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

취급		시 장
보존		
주택국장	전 결	(인)
도시개발과장	[인]	협조통제관 법무담당관 심사필 (고시안심사) 도시개발계장 [인] 협조
도시개발2계장	[인]	
기안	최 석 규	

제목 도심재개발구역 변경결정

1. 건설부 고시 제368호('73.9.6)로 구역지정 되고 종전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해 건설부 고시 제435호('79.11.22)로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된 서울역-서대문3구역 제1지구의 사업계획에 대해 변경사항이 있어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개발구역 변경 결정하고 동법 제4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해 관보에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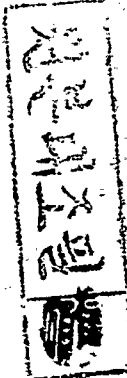
가. 구역변경결정 내용

- o 재개발사업의 명칭 : 서울역-서대문3구역 제1지구 도심재개발사업
- o 재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서대문구 미근동 216번지의외 36필지. (3118.40㎡)
- o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 : 서대문구 미근동 215번지의외 9필지. (780.10㎡)
- o 재개발구역 변경결정 조서

지 구 명	구분	시행면적 (㎡)	대지면적 (㎡)	공공시설면적 (㎡)	비 고
서울역 - 서대문 3구역 제1지구	기정	-	2,279.0	-	지적고시에 따른 측량 성과 결과 지구계 경없이 면적 정정
	변경	3,118.40	2,338.30	780.10	

o 건축계획 변경결정 조서

지 구 명	구분	건폐율 (%)	용적율 (%)	연면적 (㎡)	주된용도	층수(지상/지하)	높이 (m)	비 고
서울역-서대문 3구역 제1지구	기정	39.90	605	18,500	업무시설	15/3	67.60	
	변경	50 이하	920 이하	30,300 이하	업무시설	21이하/5	78.70 이하	



붙임 : 고시문 사본 1부. 끝.

(제2안)

수신 건설교통부장관

참조 도시관리과장

제목 재개발구역 변경결정 보고

1. 서울특별시 도심재개발 서울역-서대문3구역 제1지구에 대해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도심재개발구역을 변경결정 하였기에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 합니다.

붙임 : 고시문 사본 1부. 끝.

(제3안)

수신 총무처장관

제목 관보게재 의뢰

1.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보에 게재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게재종별 : 고시문

나. 게재건명 : 도심재개발구역 (건축계획) 변경결정 고시

다. 게재근거 :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

붙임 : 고시문 사본 2부. 끝.

(제4안)

수신 : 서대문구청장

참조 : 주택개량과장

제목 : 도심재개발구역 변경결정 통보

1. 서대문구 개량58551-2011('97.10.15)호와 관련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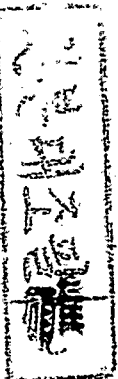
2. 위 문서번호로 변경 요청한 서울역-서대문3구역 제1지구 도심재개발사업의 구역 변경(건축계획 변경)을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통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기 바라며 건물 배치계획은 우리시 건축위원회 심의시 재검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붙임 : 1. 고시문 사본 1부.

2. 도면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071



# 고 시(안)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7 - 호

도시심사	1997. 10. 31	제 3호	
담당	도시심사제장	부무담당	
<div style="font-size: 2em; font-weight: bold;">홍</div> <div style="font-size: 2em; font-weight: bold;">유</div> <div style="font-size: 2em; font-weight: bold;">정</div>			

## 도심재개발구역변경결정

1. 우리시 도심재개발사업중 건설부고시 제368호('73.9.6)로 구역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435호('79.11.22)로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된 서울역-서대문3구역 제1지구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개발구역 변경결정하였기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도시개발과(전화:3707-8299)와 서대문구 주택개발과(전화:330-1455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97년 월 일

서울특별시장

가. 재개발사업의 명칭 : 서울역-서대문3구역 제1지구 도심재개발사업

나. 재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서대문구 미군동 216번지의외 36필지 (3,118.40㎡)

다.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 : 서대문구 미군동 215번지의외 9필지 (780.10㎡)

라. 재개발구역 변경결정 조서

지 구 명	구분	시행면적 (㎡)	대지면적 (㎡)	공공시설면적 (㎡)	비 고
서울역 - 서대문 3구역 제1지구	기정	-	2,279.0	-	지적고시에 따른 측량 성과 결과 지구계 변 경없이 면적 정정
	변경	3,118.40	2,338.30	780.10	

마. 건축계획 변경결정 조서

지 구 명	구분	건폐율 (%)	용적율 (%)	연면적 (㎡)	주된용도	층수(지상/지하)	높이 (m)	비 고
서울역- 서대문 3구역 제1지구	기정	39.90	605	18,500	업무시설	15/3	67.60	
	변경	50 이하	920 이하	30,300 이하	업무시설	21이하/5	78.70 이하	